

등록번호	간선도로과-3906
등록일자	2018. 12. 27
결재일자	2018. 12. 27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시설사무관	간선도로과 과장	도로국장
이장욱	최규용	이상헌	2018. 12. 27. 백승근
협조자	규제개혁법무담당 관 김명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검토사항	
	정책 중요도	보통
	민원·갈등 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낮음
	서민생활 관련성	보통

길어깨의 차로 활용 및 교통정온화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등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도 로 국 간선도로과

I	추진배경
---	-------------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요

- (목적)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

* 근거 : 도로법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주요내용)

-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기준 자동차 및 적용 설계속도 기준
- 도로 횡단 구성요소(차로, 길어깨, 중앙분리대등)경사 및 폭원 기준
- 도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경사 기준

- (제·개정연혁)

- ' 65. 7.19 제정 (대통령령 제2177호, 명칭 : 도로구조령)
- ' 79.11.17 개정 (대통령령 제19664호, 명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 ' 99. 8. 9 개정 (건설교통부령 제206호, 명칭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09. 2.19 개정 (국토해양부령 제101호) : 전면개정
- ' 15. 7. 7 개정 (국토교통부령 제233호) : 일부개정 (현재 운용 중)

□ 개정이유

- 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근거규정 마련

* 현재 도로교통법 상 길어깨에는 차량통행 금지

- ② 도심지, 주거지 등에서 차량진입 억제 및 속도 저감 유도를 위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 근거규정 마련

* ' 18.12 교통정온화시설에 대한 지침 마련 예정

- ③ 길어깨에서 긴급구난차량(엠블런스, 견인차, 소방차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④ 도로 기능 분류체계 개선, 한자표현 삭제 등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정의된 도로관련 용어 수정 및 규칙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①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LCS : Lane Control System)하는 규정 마련

- (개정이유) 현재 일부 고속국도에서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상 길어깨에는 차량통행이 금지(긴급자동차와 유지·보수자동차 제외)되어 있어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길어깨의 차로 활용에 대한 근거 마련 지적(국정감사, 강훈식 의원실, ‘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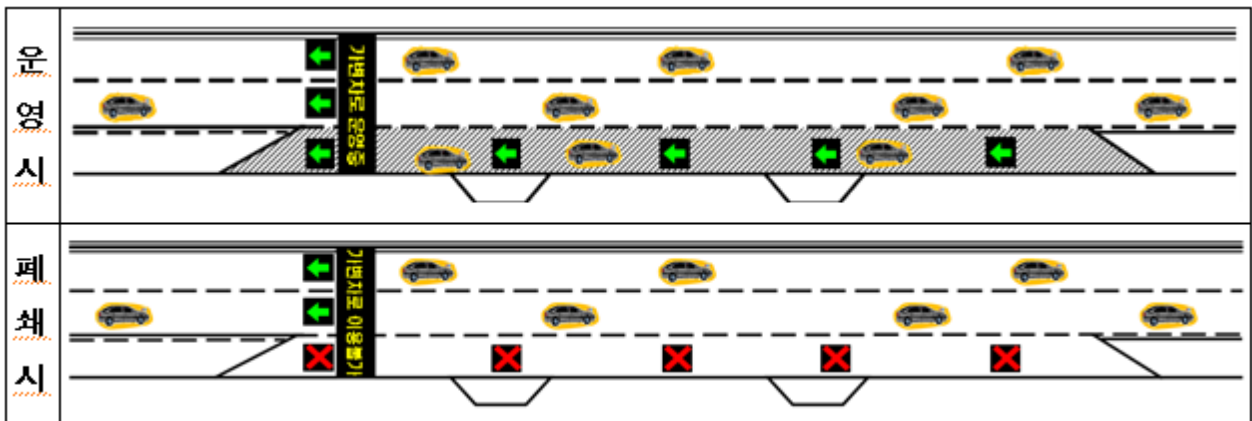
-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판단으로 일정한 기준없이 설치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현재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간 협의로 운영 (35개 구간, 246km 운영중)

○ (개정내용)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할 경우 기준제시

- 적용도로 : 고속국도 등 주간선 기능을 가진 도로
- 적용기준 : 폭(기존 차로폭과 동일), 비상주차대(길어깨 외측)등

*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통행 금지 등) 개정 병행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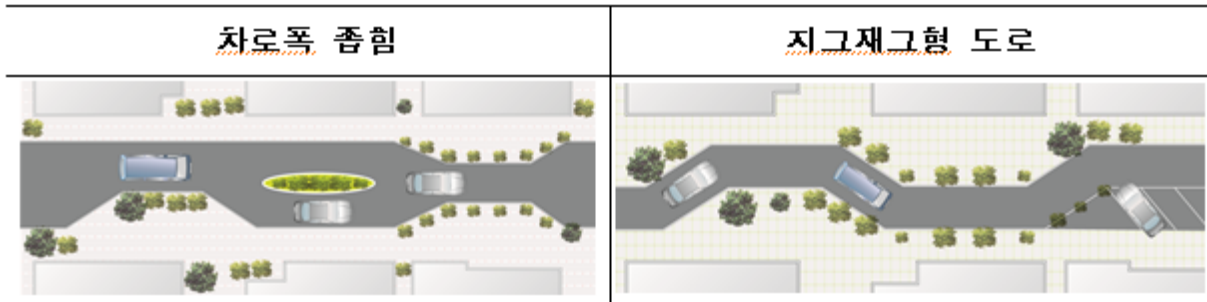
< 길어깨의 차로활용 >

② 교통정온화시설설치 규정 마련

- (개정이유) 교통정온화시설의 경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로 임의 적용하고 있어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세부기준은 ‘교통정온화시설 지침’에 마련(‘18.12 예정)

- (개정내용) 교통정온화시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예시) >

③ 긴급구난차량의 안전을 위한 시설설치 규정 마련

- (개정이유)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길어깨*에서 구급차 등이 구난 활동 중 발생하는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규정 필요

* 도로는 차로를 기준으로 계획하여 상대적으로 길어깨는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한 구간 발생 가능성 존재

- (개정내용) 길어깨 전방인지거리 부족구간, 선형불량구간 등 위험구간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노면요철포장 등) 설치 규정 추가

* 위험구간 정차배제, 비상차량 및 불법주행차량의 위험구간에 대한 경각심 유도

④ 도로관련 용어 수정 및 규칙 미비점 보완

- 도로의 구분체계 수정

- (개정이유) 고속국도를 다른 도로와 구분하였으나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전체 도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

* 고속국도법(' 14.7, 폐지)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어 구분근거 상실

- (개정내용) 고속국도는 주간선기능을 수행하므로 주간선도로에 추가

○ 도로의 기능분류 수정

- (개정이유) 도로의 기능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건설할 수 있는 도로를 규정하고 있어 도로건설에 제약*

* 지방도, 시도의 경우 주간선도로로 건설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개정내용) 도로기능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 도로관련 용어 수정

- (개정이유) 도로관련 용어 중 같은 의미로 쓰이는 중복 단어, 다른 의미이나 구분없이 사용되는 용어 정리 필요

- (개정내용) 혼란 방지를 위해 용어를 통일하고 용어 정의 수정

* (당초) 차도와 차로를 구분없이 사용 (변경) 차도 = 차로 + 길어깨로 정의수정

○ 규칙의 한글 표기(한자삭제)

- (개정이유) 한자와 병기된 단어는 혼동 우려가 없는 경우 한자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 모든 법령문은 한글로 표기한다.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는 예외적으로 병기

- (개정내용) 병행표기된 문구에서 한자표현은 삭제

III

향후 계획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 19. 1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9. 2
- 공포(고시) : ' 19. 3

붙임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신·구대비표 1부.